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88호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0호(2000.11.6)로 결정된 대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0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0.3.25)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I. 결정취지

광역중심으로의 위계 상향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확대 등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대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영등포구 대림동 1104-1 일대	45,000	증)4,480	49,48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0호 (2000.11.6)

■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구역명 변경 - 지구중심→광역중심 •구역 면적 증가 - BYC마트부지 편입으로 인한 면적 변경 45,000㎡→49,480㎡(증: 4,480㎡)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간 위상변화 (지역중심 → 광역중심)에 따른 광역거점 지역으로 효율적 토지이용 필요 •BYC마트부지 추가편입을 통한 계획적 정비 및 지역 환경 개선 도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5,000	증) 4,480	49,48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920	증) 4,991	9,810	19.8	-
	제3종일반주거지역			101	0.2	-
	준주거지역	18,830	감) 4	18,826	38.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1,250	감) 507	20,743	42.0	BYC

※ 구역 편입에 대한 면적 증가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없음

※ 기정 고시면적이 45,000㎡이나 면적 재검토 결과 44,163㎡로 산정됨, 일부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의 면적 차이는 오차로 인한 변경 면적임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4,991㎡	●구역 편입에 대한 면적 증가(BYC마트부지 관련)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감)4㎡	●공부면적 재산정에 의한 면적 감소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감)507㎡	●면적 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감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7	953	11,575	1	102	1,041	4	705	8,802	2	146	1,732
	변경	9	1,112	11,926	1	102	1,055	5	605	6,576	3	405	4,295
중로	기정	3	601	8,726	-	-	-	2	478	7,132	1	123	1,594
	변경	3	619	8,210	-	-	-	2	327	4,676	1	292	3,534
소로	기정	4	352	2,849	1	102	1,041	2	227	1,670	1	23	138
	변경	6	493	3,716	1	102	1,055	3	278	1,900	2	113	761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	248	대림동 994-26	대림동 1104-4	일반도로	서고 제2000-310호 (2000.11.06)	-
변경	중로	2	1	12 ~15	보조간선	252	대림동 994-26	대림동 1104-4	일반도로	서고 제2000-310호 (2000.11.06)	-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230	대림동 994-25	대림동 1103-16	일반도로	서고 제2000-310호 (2000.11.06)	-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75	대림동 995-4	대림동 1103-16	일반도로	서고 제2000-310호 (2000.11.06)	-
기정	중로	3	1	12	보조간선	123	대림동 994-28	대림동 1122-2	일반도로	서고 제2000-310호 (2000.11.06)	-
변경	중로	3	1	12	보조간선	292	대림동 994-28	대림동 994-25	일반도로	서고 제2000-310호 (2000.11.06)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2	대림동 1104-1	대림동 1101-16	일반도로	서고 제2000-310호 (2000.11.06)	-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2	대림동 1104-1	대림동 1101-16	일반도로	서고 제2000-310호 (2000.11.06)	가각부 조정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57	대림동 1095-1	대림동 1123-7	일반도로	서고 제2000-310호 (2000.11.06)	-
변경	소로	2	1	6 ~8	국지도로	157	대림동 1095-1	대림동 1123-7	일반도로	서고 제2000-310호 (2000.11.06)	-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51	대림동 994-25	대림동 992-2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220	8	국지도로	70	대림동 1117-6	대림동 1103-15	일반도로	서고 제1970-32호 (1970.07.25)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3	대림동 1101-23	대림동 1101-11	일반도로	서고 제2000-310호 (2000.11.06)	-
신설	소로	3	2	6	국지도로	90	대림동 1094-2	대림동 1094-15	일반도로	-	-

■ 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	• 폭원 : 15m → 12~15m • 연장 : 248m → 252m (증) 4m	• 구역계 확장 및 원활한 교통체계 고려한 폭원 및 연장 변경
중로2-2	• 연장 : 230m → 75m (감) 155m	• 구역계 확장 및 원활한 교통체계 고려한 연장 변경
중로3-1	• 연장 : 123m → 292m (증) 169m	• 구역계 확장 및 원활한 교통체계 고려한 연장 변경

소로1-1	• 가각부 조정	• 인접도로 변경에 따른 가각부 조정
소로2-1	• 폭원 : 8m → 6~8m	• 구역계 확장 및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폭원 변경
소로2-2	- 신설 • 폭원 : 8m, 연장 : 51m	• 구역계 확장 및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시설 결정
소로3-2	- 신설 • 폭원 : 6m, 연장 : 90m	• 구역계 확장 및 원활한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시설 결정

다.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공지	대림동 994-4 일대	대림동 1122-1	1,350	감) 455.6	894.4	서고 제2000-310호 (2000.11.06)	-
폐지	②	공공공지	대림동 1101-3 일대		200	감) 200	-	서고 제2000-310호 (2000.11.06)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공공공지 변경	• 장기미집행 구간 폐지에 의한 면적 변경
②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공지를 공개공지로 변경

라. 방수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방수설비	대림동 1103-11 일대	-	증) 1,527	1,527	-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2)에 방수설비 중복결정(지하)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방수설비	• 도시계획시설 신설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중로2-2, 지하)	• 이상강우 등 침수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 치된 방수설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개발여부	면적(㎡)			재정비 방향
			기정	변경	변경후	
I	대림동1126번지	기개발	3,690	감) 9	3,681	주상복합
II	대림동 994-4번지 일원(동서식품)	미개발	2,770	증) 471.6	3,241.6	업무·근생복합

III	대림동 1121번지 (신대림자이1단지)	기개발	3,770	증) 44	3,814	주상복합
IV	대림동 1122번지 (신대림자이2단지)	기개발	4,200	감) 21	4,179	주상복합
V	대림동1104-1번지 일원(BYC) (특별계획구역)	미개발	11,540	증) 642	12,182	상업·업무복합
VI	대림동1101-7번지	기개발	2,963.7	증) 3.3	2,967	업무복합
VII	대림동1101-1번지 (유탐윙블레이스)	기개발	950	증) 14	964	주상복합
VIII	대림동1005-3번지 일원(BYC마트)	미개발	-	증) 4,184	4,184	업무·근생복합

※ 면적은 향후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 불허용도계획(기정)

적용구역	전층 불허용도	1층 불허용도
A	- 일반상업지역 내 불허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전층 불허용도 - 건축자재·난방 및 수도, 페인트, 유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소매점 - 타이어, 밧데리 등 자동차 관련 소매점
B	- 준주거지역 내 불허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전층 불허용도와 동일
C	- 준주거지역 내 불허용도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단, 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적용할 수 있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전층 불허용도와 동일

■ 건축물 불허용도계획(변경)

적용구역	전층 불허용도
공통	- 해당 용도지역 내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A, B, C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장례식장	지역생활환경 저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불허용도 변경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권장용도(기정)

구분	전층 권장용도	1층 권장용도
1 (특별계획구역)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2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1층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3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1,000㎡ 미만의 상점 • 1층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 1층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전체 용도의 경우 당해용도가 연면적의 40% 이상, 1층 용도의 경우 당해용도가 당해 1층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봄

■ 건축물의 권장용도(변경)

구분	전층 권장용도	1층 권장용도
1 (특별계획구역)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2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
3	• 판매시설 중 상점(1,000㎡ 미만) • 공동주택	-
4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5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특별계획구역)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및 판매시설 복합 • 1층 권장용도 판매시설 중 상점 적용	• 광역중심지 기능 육성 위한 복합개발 및 연계 유도 • 「서울생활권계획」 및 현황여건을 고려한 필요시설 입지 유도
2	• 근린생활시설 삭제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1층 권장용도 삭제	• 「서울생활권계획」 및 현황여건을 고려한 필요시설 입지 유도
3	• 제1층근린생활시설 삭제 • 1층 권장용도 삭제	• 「서울생활권계획」 및 현황여건을 고려한 필요시설 입지 유도
4	• 추가편입부지(BYC마트부지) 내 권장용도 신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광역중심지 기능 육성 위한 복합개발 및 연계 유도 • 「서울생활권계획」 및 현황여건을 고려한 필요시설 입지 유도
5	• 동서식품부지 내 권장용도 신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 광역중심지 기능 육성 위한 복합개발 및 연계 유도 • 「서울생활권계획」 및 현황여건을 고려한 필요시설 입지 유도

다. 건축물의 용도완화 결정(변경)조서

구분	내용	비고
가	전 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단,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 근린생활시설 확보 시 완화	BYC마트부지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 BYC마트부지 전층에 대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용도완화 사항 추가	• 주변지역 및 특별계획구역의 광역중심기능 강화 지원 등을 위하여 BYC마트부지 업무시설 용도완화

라.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계획(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준주거지역	6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계획(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 BYC마트부지 편입으로 인한 건폐율 계획 신설

2)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용적률 계획(기정)

구분	용적률 계획(%)				상한용적률
	1,000㎡ 이하		1,000㎡ 이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준주거지역	250% 이하	360% 이하	300% 이하	360%	조례용적률 2배 이하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550% 이하	300% 이하	600%	

■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용적률 계획(%)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조례용적률 2배 이하	※기 개발지에 한하여 기정 용적률계획 유지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630% 이하		

주) 1.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 수립기준」 1-4-4(4)에 따라 지상부 용적률 10% 이상으로 함
2.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 용도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별표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2호」(2019.09.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호」(2019.09.19)를 준수하여 용도비율 및 용적률을 적용
 3.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4. 장기전세주택 및 관광숙박시설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름
 5. 상한용적률은 공공기여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0항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19.01.16)」 적용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계획내용 추가	• BYC마트부지의 추가 편입에 따른 용적률 계획내용 추가
준주거지역	• 300%이하 / 360%이하	• 현행 기준을 반영하여 용적률 계획
일반상업지역	• 300%이하 / 630%이하	• 실현 가능한 개발유도를 위해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완화

3)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 높이계획(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준주거지역	30 ~ 70m 이하(10~20층 이하)	-
일반상업지역	75 ~ 88m 이하(25층 이하)	-

■ 건축물 높이계획(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
준주거지역	60m 이하	• 동서식품 : 88m 이하 • BYC(특별계획구역) : 120m 이하
일반상업지역	75 ~ 120m 이하	(단, 주동의 평균높이 88m이하 적용)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간선부	• 일부 지역 높이 완화 - 특별계획구역(BYC) : 88m → 120m 이하 (단, 평균높이 88m이하 적용)	• 광역중심기능 강화 및 적정개발 규모 유도
이면부 (제2종일반주거지역)	• 30m 이하	• 복합기능 유도 및 접도조건 고려

4)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형태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기정)

구분	적용기준	비고
건축한계선	시흥대로변 도림천로변	건축한계선 5m
		• 가로경관의 향상 • 유효한 전면공지 확보 •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12~15m 도로변	중로2-1	건축한계선 3m	• 일조권 및 보행환경 확보
		중로3-1		
	BYC마트부지		-	
	공공공지①		건축한계선 3m	
	그 외 구간		건축한계선 1~2m	
벽면한계선			벽면한계선 2~8m	• 불합리한 보행동선 개선 • 공원녹지공간과 연계 강화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건축한계선	시흥대로변 도림천로변		건축한계선 5m	• 가로경관의 향상 • 유효한 전면공지 확보 •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 일조권 및 보행환경 확보
	12~15m 도로변	중로2-1	건축한계선 3~5m	
		중로3-1	건축한계선 6m	
	BYC마트부지		건축한계선 3m	
	공공공지①		건축한계선 3~5m	
	그 외 구간		건축한계선 1~2m	
벽면한계선			벽면한계선 2~8m	• 불합리한 보행동선 개선 • 공원녹지공간과 연계 강화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2~15m 도로변 (중로2-1, 3-1)	건축한계선 변경 - 3m → 3~6m	주변 가로 특성을 고려한 연속성과 통일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BYC마트부지	건축한계선 추가 - 3m	
공공공지①	건축한계선 변경 - 3m → 3~5m	

5)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간선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형 벽 설치하며, 셔터는 투시형 셔터 사용 1층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함	-
	고층부 형태	- 지역의 랜드마크적 기능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특별 계획구역에 대하여 지정 - 고층부 탑상형 지정을 통한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색의 사용은 금하도록 함	-
	담장 및 옹벽처리	- 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함(설치시 식재담장, 투시형 담장 권장) - 옹벽 등의 조성은 가급적 지양 함(설치시 자연적 소재 사용 권장 및 주변과 조화 도모)	-

야간조명	- 투시형 벽면설치 시 내·외부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함 -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 대규모 개발지 및 전면도로변, 도로가각부에 대하여 권장	-
옥외광고물	- 외부에 노출이 심하거나 건축물과의 이질감이 심한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규제 - 통합간판 설치 유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및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용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폭 25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형 벽으로 설치,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 폭 25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경우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 하여서는 아니됨(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외)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 건축물의 1층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고층부 형태	- 지역의 랜드마크적 기능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폭 25m이상 도로변에 대하여 탑상형 건축물을 권장 - 고층부 탑상형을 통한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롭게 하고, 원색의 사용은 금하도록 함	-
	담장 및 옹벽처리	- 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함(설치 시 식재 담장, 투시형 담장 권장) - 옹벽 등의 조성은 가급적 지양 함(설치 시 자연적 소재 사용 권장 및 주변과 조화 도모)	-
	야간조명	- 투시형 벽면설치 시 내·외부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함 -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 전면도로변, 도로가각부에 경관조명 설치 권장	-
	옥외광고물	- 외부에 노출이 심하거나 건축물과의 이질감이 심한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규제 - 통합간판 설치 유도 「옥외광고물 등 설치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구역내 3개소(위치권장) ※설치기준 :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별도지침 준수	-
쌈지형공지	구역내 4개소	-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구역내 5개소(위치지정) ※설치기준 :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별도지침 준수	- 추가편입구역(BYC마트부지) 내 1개소 신설 - BYC부지 1개소 신설 및 기존 2개소 위치변경
쌈지형공지	구역내 4개소	-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개공지	• 추가편입구역(BYC마트부지) 내 1개소 신설 • BYC부지 1개소 신설 및 기존 2개소 위치변경	• Open Space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공개공지 계획 변경

나. 차량출입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차량출입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구역내 4개소(폭4m, 지정 3개소/권장 1개소)	• 특별계획구역(BYC) 외 3개소 지정 • 특별계획구역(BYC) 내 1개소 권장
입체보행통로	구역내 2개소 (위치 권장 / 지정)	변경없음
차량출입 불허구간	시흥대로변	변경없음

■ 차량출입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구역내 5개소(지정) - 특별계획구역(BYC) 내 1개소 신설(폭 4m)	• 특별계획구역(BYC) 외 3개소 지정 • 특별계획구역(BYC) 내 2개소 지정 (동서방향 폭 6m, 남북방향 폭 4m)
입체보행통로	구역내 2개소 (위치 권장 / 지정)	변경없음
차량출입 불허구간	시흥대로변	변경없음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보행통로	• BYC부지 내 지정 1개소 추가(남북방향 폭 4m)	• 구역 내 원활한 보행환경을 위한 신설

다.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계획(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지반보존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지반조성 권장	-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조성기법(2001. 10. 24.)에 의한 설치 권장	-
녹색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
중수도시설설치	• ‘수도법’ 제14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 권장	-
빗물이용시설설치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 권장	-
신재생에너지사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법령’ 및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자부 고시 제2007-52)’의 기준에 따라 설치 권장	-
에너지절약계획	•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 세부지침’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 설치 권장	-

■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에 따라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법령’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의 기준에 따라 설치 권장	-
중수도시설설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서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 권장	-
빗물관리시설설치	‘서울시 저영향 사전협의제도(2014. 1.)’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관리시설 도입 권장	-
옥상녹화	‘서울시 옥상녹화 시스템 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지침(2013. 5.)’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자연지반보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흙, 자갈, 잔디 등의 자연재료 및 투수성 포장	-
녹색주차장	‘서울시 녹색주차장 활성화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

4. 인센티브 운영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1) 용적률 인센티브(기정)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구분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동건축	동일소유의 필지 공동건축 시	기준용적률 × 0.2	기준용적률 × 0.1	-
	동일소유의 필지가 아닌 필지들간의 공동건축 시	기준용적률 × 0.3	기준용적률 × 0.2	-
건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선이 지정되어 조성지침에 따라 조성하는 경우	(제공된 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상회하여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공개공지면적 - (공개공지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5%)}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건물과 직접 연결되는 입체보행 공간 조성시	지하철 역사 및 지형적 특성에 의한 가로와 건축물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입체보행공간 (데크나 지하통로 등)을 조성할 경우	기준용적률 × 0.5		-
권장용도	권장용도의 지침준수	{(권장용도면적 ÷ 건축면적) × 0.2} × 기준용적률		-
건축형태	간선도로변이나 탑상형건축	기준용적률 × 0.1		-
	캐노피 설치시	기준용적률 × 0.1		-
	피로티 설치시	기준용적률 × 0.1		-
공동주차장	공동주차장 설치	기준용적률 × 0.15		-
상한용적률	대지의 일부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허용용적률 × 1(1-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기 전 대지면적)		-

2) 용적률 인센티브(변경)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단, 기개발지에 한하여 지정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지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유도 및 규제항목 준수시(70%이내)	친환경 계획 준수시(30%이상)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2.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친환경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친환경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4. 전층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 당해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바닥면적 산정 시 주차장 제외)
5. 조경면적,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 등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예: 공개공지와 전면공지 등)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 A(일반상업지역)

구 분		계획내용		
위치특성		• 일반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BYC) 공통 적용		
기준/허용용적률		• 일반상업지역(300%이하 / 630%이하)		
구분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 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70%이내)	획지계획	획지단위 개발시	기준용적률 × 0.2	-
	권장 용도	전층 50% 이상 설치시 (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면적 ÷ 건축면적) × 기준용적률	-
		1층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0이상 설치시	기준용적률 × 0.2 이내	-
	공개공지	설치시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0.4 ※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초과시	삼지형공지 포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선이 지정되어 조성지침에 따라 조성하는 경우로 의무면적 초과시(공공보행통로와 중복적용 불가)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0.4	-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조성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필로티구조시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0.7	-

	입체보행통로	입체보행통로 조성시	기준용적률 × 0.6이내	※특별계획구역(BYC)은 지하철 출입구와 직접 연결되는 데크 조성시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시	기준용적률 × 0.2이내	-
	건축물 개방	입체보행통로와 연계한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시	제공면적 / 연면적 × 기준용적률 × 0.5	-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 B(준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위치특성		• 준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BYC) 공통 적용		
기준/허용용적률		• 준주거지역(300%이하 / 360%이하)		
구분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 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70%이내)	획지계획	획지단위 개발시	기준용적률 × 0.1	-
	권장 용도	전층	50% 이상 설치시 (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면적 ÷ 건축연면적) × 기준용적률
		1층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기준용적률 × 0.2 이내
	공개공지	설치시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0.4 ※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초과시	쌈지형공지 포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선이 지정되어 조성지침에 따라 조성하는 경우로 의무면적 초과시(공공보행통로와 중복적용 불가)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0.4	-
	공공보행 통로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조성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필로티구조시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0.7	-
	입체보행 통로	입체보행통로 조성시	기준용적률 × 0.30이내	-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시	기준용적률 × 0.15이내	-
	건축물 개방	입체보행통로와 연계한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시	제공면적 / 연면적 × 기준용적률 × 0.5	-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전체 인센티브의 30% 이상) - 공통사항

세 분	완화기준			세부내용	비 고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기준용적률×0.12	3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 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
	우수(그린2등급)	기준용적률×0.08			
	우량(그린3등급)	기준용적률×0.04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에너지효율1등급	기준용적률×0.08			
	에너지효율2등급	기준용적률×0.06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에너지효율3등급	기준용적률×0.04			
신재생 에너지보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20%초과	기준용적률×0.12			

확대	신재생에너지공급률 15%초과 20%이하	기준용적률×0.10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별표1)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신재생에너지공급률 10%초과 15%이하	기준용적률×0.08		
	신재생에너지공급률 5%초과 10%이하	기준용적률×0.06		
	신재생에너지공급률 3%초과 5%이하	기준용적률×0.04		
중수도 시설 설치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
옥상녹화	기준용적률×(녹화면적 / 대지면적)×0.1		•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녹화면적 / 대지면적)×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녹화면적 / 대지면적)×0.2		• 기준용적률×0.05 이내	-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변경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변경 • 친환경 인센티브 계획 신설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의거 인센티브 계수 조정 • 친환경 건축 계획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센티브 계획 신설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구분	유형	계획방향
간선부 (일반상업지역)	A	• 획지계획으로 역세권에 적합한 적정 개발규모 유도 • 복합용도 도입 유도 •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계획으로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이면부 (준주거지역)	B	• 획지계획으로 역세권에 적합한 적정 개발규모 유도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대림동 1104-1번지 일원	15,730	최초결정일 서고시 제2000-310호 (2000.11.06)
변경			16,275	

■ 계획기준(기정)

구분	계획기준		비고
위치	• 대림동 1104-1번지 일원		-
용도지역·지구계획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 기준용적률 : 300% • 허용용적률 : 600% • 상한용적률 : -	현재 용적률: 79.22%
최고높이		• 최고높이 88m이하	-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전층 • 일반상업지역 내 불허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현재 용도 : 공장
		1층 • 건축자재, 난방 및 수도, 페인트, 유리 등 기타 유사한 소매점 • 타이어 배터리 등 자동차 관련 소매점	
	권장용도	전층 •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	
		1층 • 판매시설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 도림천변 5m • 구역 북측 5m, 동측 3m, 서측 2m	-
공공시설 확보계획	공공기여 계획	•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 - (주)BYC부지 내에 신설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용지는 공공에 기부채납 한다.(약 26%내외)	순부담: 26%내외 (방수설비 미포함)
	방수설비 설치계획	• 방수설비시설(빗물펌프장) - 방수설비 시설부지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개발건물과 일체적 (복합적)으로 건설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위치 및 이전비용은 추후 지자체와 개발주체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한다.	-
기타 계획지침		• 공개공지 : 대지면적의 10% 이상(「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포함) • 공공보행통로 : 지구내부 동서방향 4m 이상 • 입체보행통로 : 구로디지털단지에서 건축물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 토록 계획	-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기정) : 기정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및 상한용적률을 따름

■ 계획기준(변경)

구분	계획기준		비고
위치	• 대림동 1104-1번지 일원		-
토지이용	• 광역중심지 기능수행을 위한 상업·업무 복합개발		-
용도지역·지구계획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가구 및 획지	가구	• 가구(V) • 16,275㎡(BYC부지)	-
건축물 밀도	건폐율	일반상업/준주거지역 • 6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일반상업지역 • 기준/허용/상한: 300%/630%/조례용적률2배 이하 준주거지역 • 기준/허용/상한: 300%/360%/조례용적률2배 이하	-
최고높이		• 일반상업지역 : 120m이하 (단, 주동의 평균높이 88m이하 적용) • 준주거지역 : 60m이하	-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전층 • 해당 용도지역 내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 표소) 및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장례시장	
	권장용도	전층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1층	•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 도림천변, 구역 북측 : 5m / 구역 서측 : 3m / 구역 동측 : 6m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 3m)		—
공공시설 확보계획	공공기여 계획	• 도로 및 건축물 공공기여 ⇒ 대지면적의 26% 이상 - 도로 : 중로2-1(B=12m), 중로2-2,(B=15m) 중로3-1(B=12m), 소로1-1(B=10m), 소로2-1(B=6~8m) ※ 중로2-1, 중로2-2, 중로3-1, 소로1-1, 소로2-1가 실효될 경우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 건축물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 허용용적률 중복적용 불가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계획(2015.08.25)」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영등포구 및 서울시 통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로 계획에 대한 교통량조사 및 교통 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검토 ※공공기여량 산정(연면적 등)은 세부개발 계획시점에 재산정 하고, 건축허가 시점에 확정됨
		• 방수설비(기존 10년빈도) 설치 및 이설은 개발주체 의무부담 -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2)와 방수설비 중복결정 - 세부개발 수립 시 위치·규모 등 세부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 • 방수설비의 용량(빈도수 등)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 현재 설비기준(10년 빈도)에서 증설(30년 빈도)할 경우 등 - 빈도수 증가에 따른 증대부분(추가비용 등)은 세부개발 수립시 관련부서와 협의 결정 - 방수설비 증가에 따른 증대부분(빈도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시 증대 부분에 대해 공공기여 인정으로 상한용적률 적용 가능 ※ 방수설비는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 인정 여부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개발계획과 연계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 결정하도록 함(방수설비 용량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기여량 재산정 검토 등)		—
기타 계획지침		• 공개공지 : 3개소(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포함) ① 서측 도로(소로2-1) 가각부 ② 입체보행통로 주변 ③ 북측 교차로 • 공공보행통로(지정) : 2개소 ① 구역 내 동서방향(6m) ② 구역 내 남북방향(4m)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심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하며 피로티형으로 할 경우 높이 6m 이상으로 할 것 • 입체보행통로(지정) : 1개소(구로디지털단지 ↔ BYC 연결)		※ 공개공지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설치 ※ 입체보행통로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도록 설치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변경) : 변경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및 상한용적률을 따름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및 부칙 제4조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음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썸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중·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7. 법령이나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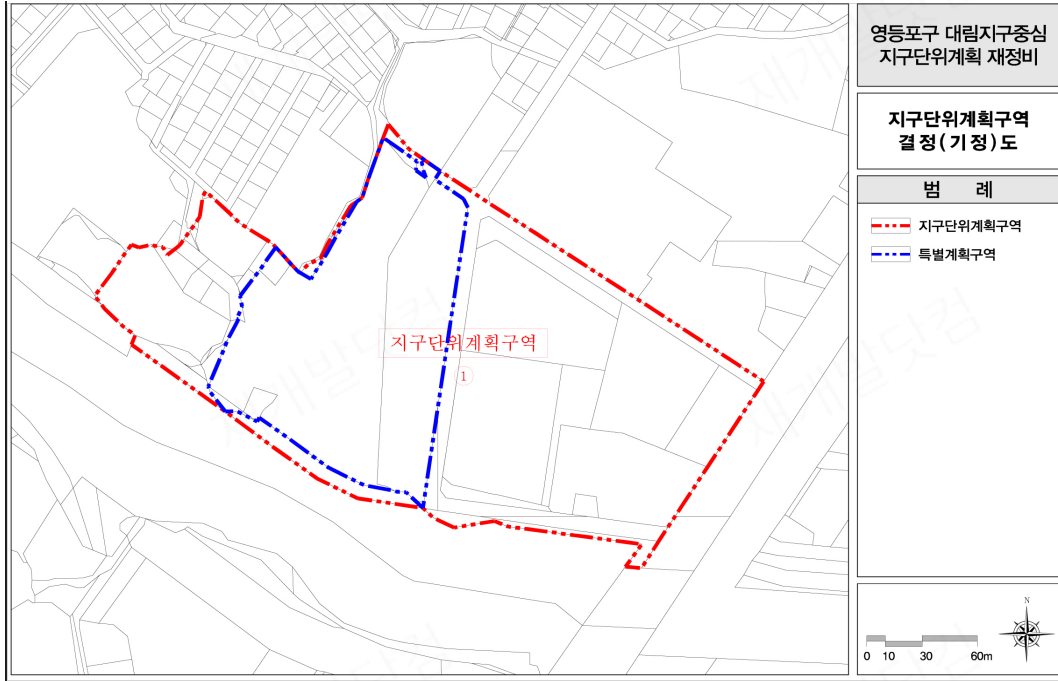
III.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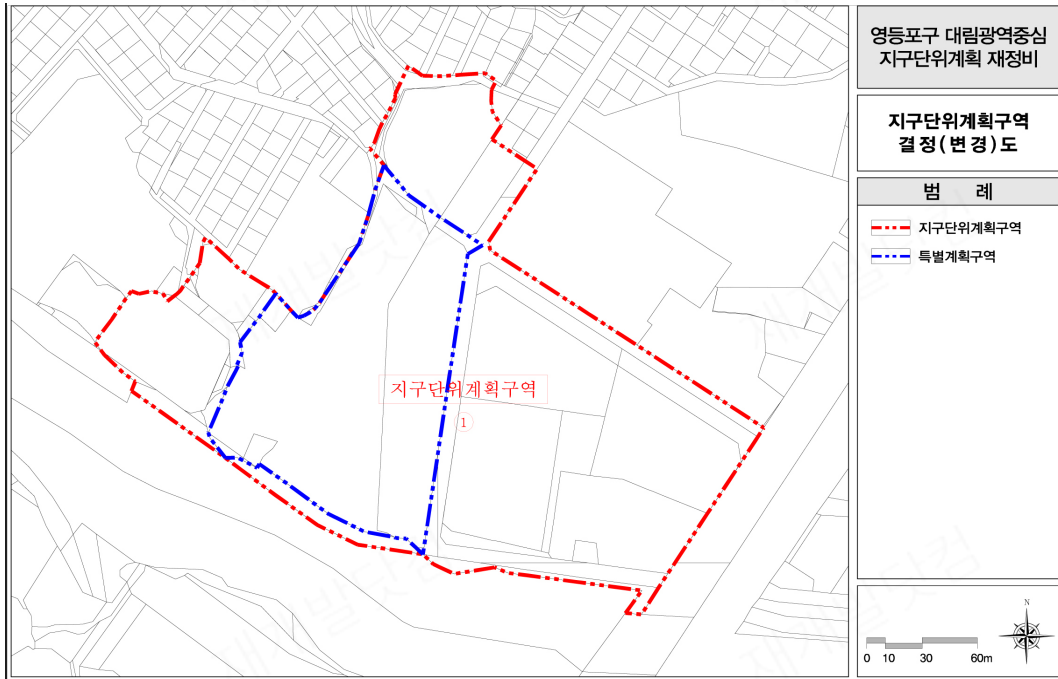
IV.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4), 영등포구 도시계획과(☎02-2670-3541)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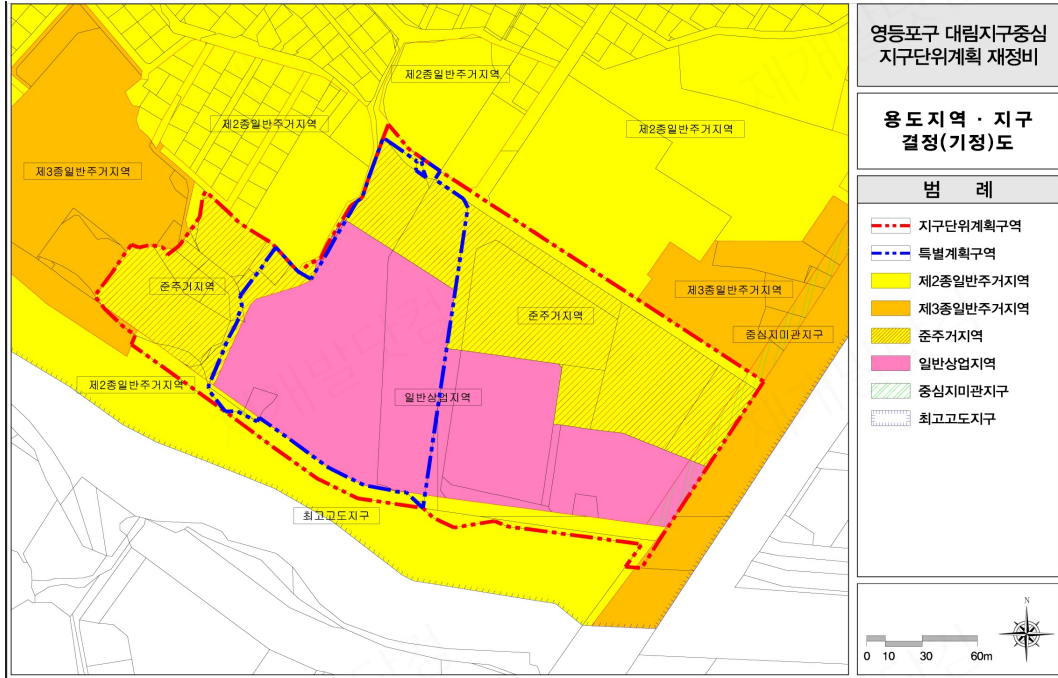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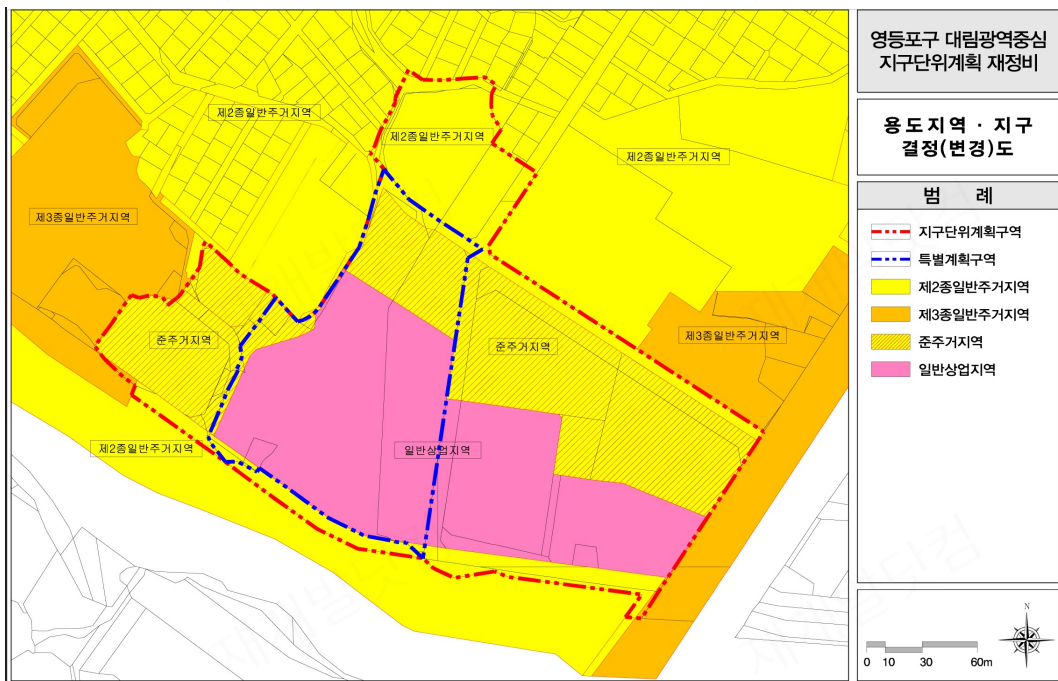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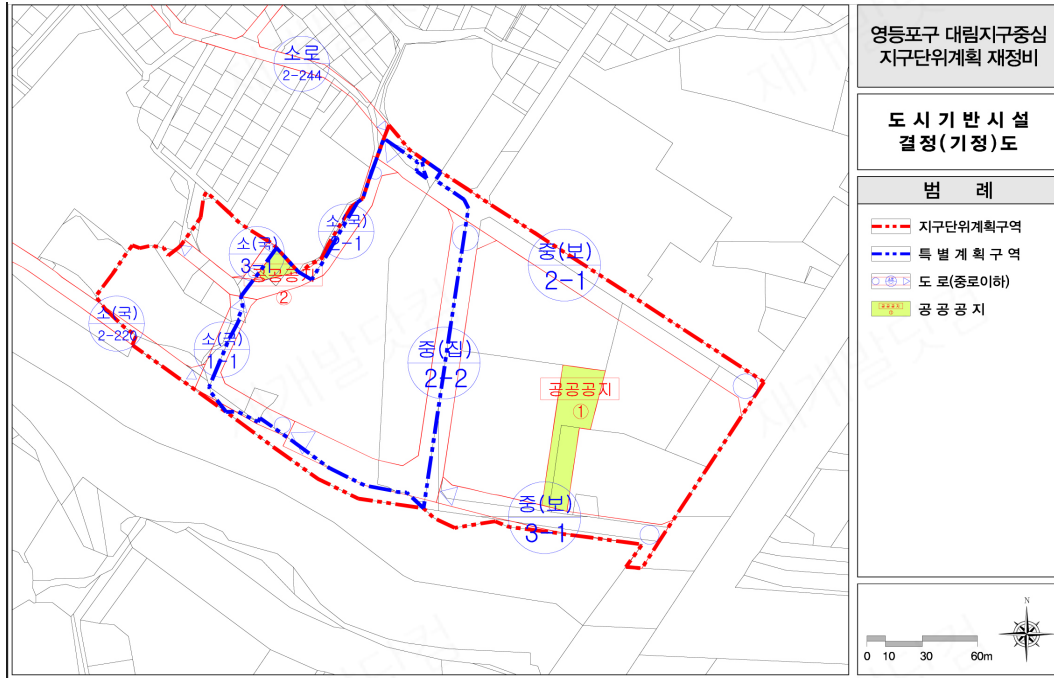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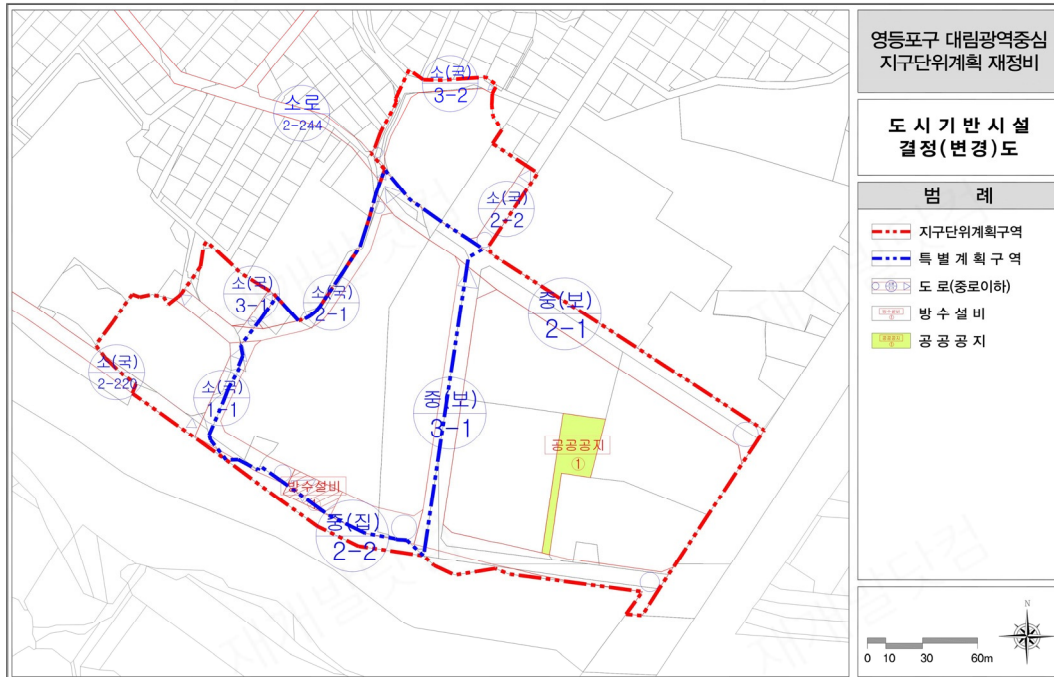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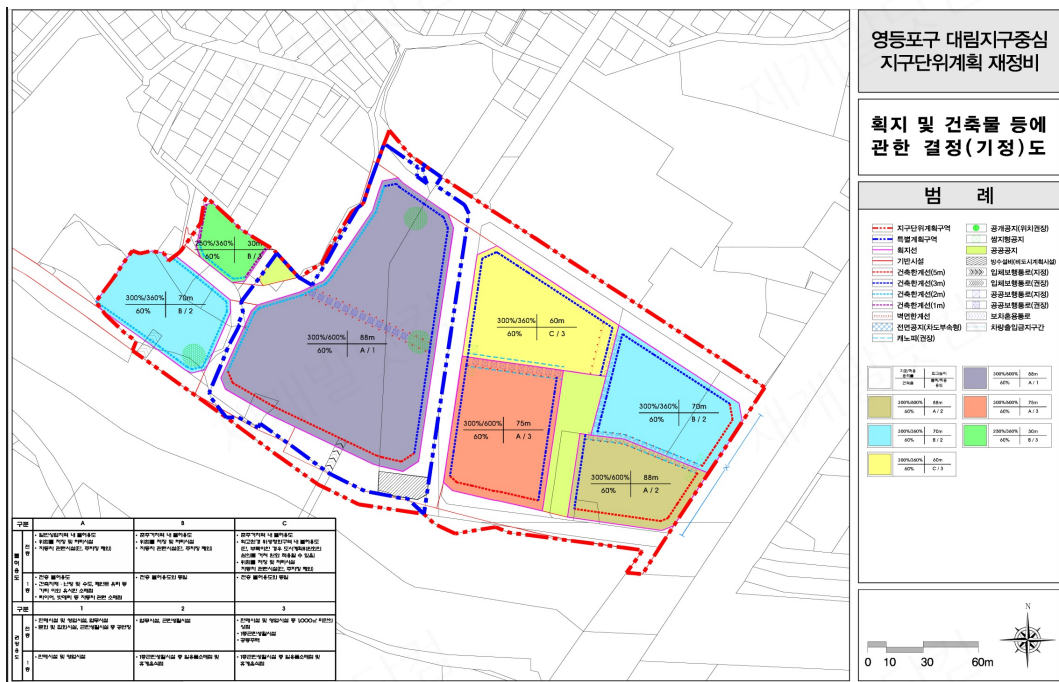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영등포구 대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재지위지점
	특별계획구역		생지형공지
	하천선		공공공지
	기법시설		반수침해피해지역지점
	건축물개선(5m)		임대주택용도지점
	건축물개선(3m)		공공보통용도지점
	건축물개선(2m)		공공보통용도지점
	건축물개선(1m)		공공보통용도지점
	역면단개선		보치유용공로
	전면단개선(차도부속형)		차량출입금지구간
	계도매(경상)		

영등포구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금지위치지정
	특별계획구역		폐지공공지
	획지선		공공공지
	기법시설		방수설비
	건축완개선(5m)		입체교통통로(지정)
	건축완개선(3m)		입체교통통로(건설)
	건축완개선(3m)		공공교통통로(지정)
	건축완개선(3m)		차량출입금지구간
	건축완개선(1m)		
	벽면완개선		
	전면금지(차도부속권)		

